

2027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행정예고(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6 - 216호

『2027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027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2027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부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의 기본 방향

현행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차례의 용어 수정

- 차례의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특별채용**’ 을 ‘**경력경쟁채용**’ 으로 용어 수정
- 개정사유: 차례와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수정

4. 행정예고 기간 : 2026. 5. 11.(월) ~ 2026. 5. 31.(일)

5. 의견 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방법

- 1) 전자문서 공문(수신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제출
- 2) 업무 담당자 이메일(nacl80@sen.go.kr) 송부

나. 제출 서식: <서식 1> 또는 <서식 2>

- ※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개정안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학년도 유치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 붙임 1.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
- 2. 2027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안)
- 3. 2027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안)
- 4. 검토 의견(서식)

<붙임 1>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신규 대조표

현행(2026학년도)	개정안(2027학년도)	개정 사유
2026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2027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연도 수정
제7조 (전보기준 공개) 전보주관 교육지원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제7조 (전보 기준 공개) 전보주관 교육지원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9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기간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 기간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띄어쓰기 수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6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7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연도 수정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 산구 대조표

현행(2026학년도)	개정안(2027학년도)	개정 사유
2026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2027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연도 수정
차례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특별 채용	차례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경력경쟁채용	문구 수정
제8조 (전보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제8조 (전보 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24조 (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 」 제5조 제1항 교육장 위임사항에 의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제24조 (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 제5조 제1항 교육장 위임사항에 의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29조 (전형응시자격) ③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의사, 영양교사는 「 2026학년도 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 」을 준용한다.	제29조 (전형응시자격) ③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의사, 영양교사는 「 2027학년도 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 」을 준용한다.	연도 수정
제39조 (종류 및 방법) 사립특수학교 의 폐교·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사 발생 시 또는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전형을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39조 (종류 및 방법) 사립 특수학교 의 폐교·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사 발생 시 또는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전형을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띄어쓰기 수정
제40조 (대상 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특수학교 에 근무하는 교사 중 경력경쟁채용 임용 예정일 현재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0조 (대상 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 특수학교 에 근무하는 교사 중 경력경쟁채용 임용 예정일 현재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띄어쓰기 수정
제41조 (경력경쟁채용시기)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경력경쟁채용은 교사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당해 학년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1조 (경력경쟁채용 시기)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경력경쟁채용은 교사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당해 학년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 수정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6 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7 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연도 수정

2027학년도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

A large, faint, light gray version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logo is visible in the bottom-left corner of the page, serving as a background element.

2027학년도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제1장 총칙	1
제2장 원장 임용 및 제청 추천	2
제3장 원감 임용	3
제4장 수석교사 임용	3
제5장 교사 임용	4
제6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 임용	4
제7장 장학사 · 교육연구사 임용	4
제8장 보칙	5
□ 부칙	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원칙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① 이 원칙은 공립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에 적용한다.

② 공립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에 의한다.

③ 단위 유치원별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단,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신규임용 및 전직·전보) ① 원장·원감과 교육전문직원의 신규임용 및 전직·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수석교사·교사의 전보는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기 중 전직·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타시·도간 교원의 교류는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을 들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휴직·파견의 후임 및 복직) ①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파견 등의 교원 후임은 정원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파견 등을 한 교원이 복직·복귀 시 원 소속 유치원으로 복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수급 상황에 따라 소속 교육지원청의 타 유치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원감은 타 교육지원청 유치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품성과 자질 평가) 원장자격연수·중임심사, 원감자격연수대상자선정, 수석교사선발·업적평가·재임용심사,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현장근무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 (임용 시기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 전직 또는 승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7조 (전보 기준 공개) 전보주관 교육지원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제8조 (긴급 전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입을 것이 우려되는 교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긴급 전보할 수 있다.

제9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 기간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장 원장 임용 및 제청 추천

제10조 (임용 제청 추천 자격)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 제청 추천한다.

1. 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2. 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3. 원감에서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전직 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자
4. 교육전문직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1년 이상인 자

제11조 (원장의 중임) 원장임기제에 따른 원장의 중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 (공모에 따른 원장 임용) 공모에 따른 원장 임용은 「공무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및 「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3조 (전보 대상) ① 원장 정기 전보 주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비정기 전보는 현임 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 유치원 2년 이상 근무자로 제한한다.
- ③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현임 유치원 1년 미만 근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제14조 (전보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2차 임기 만료자 포함) 2년 이하인 자
 2. 교육감 지정 이상의 연구유치원 원장으로 유치원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유로 전보 유예가 불가피한 자
- ② 제1항 제2호~제3호의 경우 전보 유예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고 1회에 한한다.
- ③ 제1항 제2호~제3호의 경우로 유예한 경우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어도 유예할 수 없다.

제15조 (임지 배치) ①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하되, 직무수행 능력, 청렴도, 교통편의, 교육경력, 근무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② 현임 유치원 재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이를 반영하여 임지 배치한다.
- ③ 전임 원장 재임기간이 2년 이하인 유치원에는 정년 잔여 2년 이하인 원장은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원감 임용

제16조 (임용자격) 유치원 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승진순위에 해당 하는 자 (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2. 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3. 교육전문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단, 휴직 기간은 제외하며, 국내·외 연수기관 파견 등은 별도 계획에 따른다.)

제17조 (임지 배치 및 전보) ①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실시하되, 직무수행 능력, 청렴도, 교통편의, 교육경력, 근무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간 전보 및 관내 전보를 실시한다.

- ② 원감의 교육지원청 배정은 교육감이 하고, 근무 유치원 배치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다.
- ③ 교육지원청간 전보는 원거리 통근,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장의 제청을 받아 교육감이 시행한다.
- ④ 원감 정기 전보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교육지원청 관내 전보는 교육지원청의 실정에 따라 교육장이 시행한다. 단, 교육지원청의 실정에 따라 현임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비정기 전보는 현임 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 ⑥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현임 유치원 1년 미만 근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 ⑦ 교육지원청 실정이나 교육상 불가피한 사유로 전보를 유예하고자 할 때의 기간은 학기 단위로 하고, 2회까지 할 수 있다.

제4장 수석교사 임용

제18조 (임용자격) 수석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19조 (임지 배치 및 전보) ①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실시하되, 직무수행능력, 청렴도, 교통편의, 교육경력, 근무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청간 전보 및 관내 전보를 실시한다.

- ② 수석교사의 교육지원청 배정은 교육감이 하고, 근무 유치원 배치는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한다.
- ③ 수석교사의 정기 전보 주기는 4년으로 한다.
- ④ 비정기 전보는 현임 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 ⑤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현임 유치원 1년 미만 근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 ⑥ 정년 잔여 2년 이하인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장 교사 임용

제20조 (임용) ① 교육감은 유치원 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한 자를 수급상황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배정하고 교육장이 임용한다.

② 초빙교사의 임용은 「초빙교사 임용 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에 의한 원로교사 임용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의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21조 (전보) ① 교사의 전보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교육장 위임사항에 의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② 교사의 전보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관하여 교육장 간에 합의한 별도 계획에 의해 교육지원청을 배정한 후,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내 전보를 시행한다.

③ 교사 정기 전보 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④ 전보 유예의 기준, 초빙교사의 초빙요건은 단위 유치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

⑤ 초빙교사 비율은 유치원 교사 전보원칙에 의한다.

⑥ 공립유치원 보건교사의 급간 교류는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⑦ 타시·도간 교류 교사의 전보는 별도 계획에 의거 교육감이 시행한다.

제22조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제 교원은 「공립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원장이 임용한다.

제6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제23조 (임용, 제청 및 전보) ① 장학관·교육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승진순위에 해당하는 자
2. 원장 또는 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보는 교육행정·연구능력, 교육경력, 소속기관 간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7장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제24조 (선발 임용)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공개 전형을 통해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선발 임용한다.

제25조 (전형 응시자격) ① 서울특별시 소재 공·사립 유치원의 원감·교사로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고 서울 시내 소재 유치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인 1급 정교사
2. 교육경력이 19년 이상이고, 원감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26조 (3회 이상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의 감점 적용)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에 3회 이상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는 4회 응시부터 감점제를 적용한다.

제27조 (전형 방법) 서류전형과 1·2차 전형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 평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① 서류 전형은 추천 기준, 임용상의 결격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격 처리한다.
- ② 1차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직실무 및 전문성평가를 실시한다.
- ③ 2차 전형은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근무실태평가,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한다.

제28조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최종 합격자는 전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유효 기간은 임용예정일 기준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임용자는 다음 해 명부에 최우선 순위로 등재할 수 있다.

제29조 (임용)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의 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30조 (전직) ①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은 근무 기간, 연령, 소속 기관의 업무 형편, 기타 전직 사유 등을 고려한다.

- ② 교사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 후, 5년 이상 근무하고 교원으로 전직할 때 전직될 직위의 임용 요건을 갖춘 경우, 원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 ③ 원감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 후,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원으로 전직할 때 전직될 직위의 임용 요건을 갖춘 경우, 원장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 ④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한 후 1년(과건 기간 포함) 동안의 직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교육전문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에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직전의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제31조 (전보) ① 현임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자질, 능력, 경력, 근무실적, 소속기관 간의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②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1년 미만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32조 (기타사항)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시 이에 따른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사관리원칙을 다르게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33조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지침 수립)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련 법규와 이 인사관리원칙을 근거로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7**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원칙 시행 당시 종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2027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차 례

제1장 총칙	1
제2장 교장 임용 및 제청 추천	2
제3장 교감 임용	3
제4장 수석교사 임용	3
제5장 교사 임용	4
제6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4
제7장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5
제8장 국·공립 특수학교 간 교원의 교류	6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경력경쟁채용	6
제10장 보 칙	7
□ 부칙	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원칙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원칙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신뢰성을 확립하여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방침) ① 이 원칙은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에 적용한다.

② 국·공립 특수학교 간 교원의 교류와 사립 특수학교 교사의 경력경쟁채용도 이 원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에 있어서 별도의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원칙에 의한다.

④ 단위 학교별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 (신규임용 및 전직·전보) ①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원의 신규임용 및 전직·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수석교사 및 교사의 전보는 3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학기 중 전직·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한다.

② 타시·도간 교원의 교류는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교원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을 들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전직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휴직·파견의 후임 및 복직) ①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장기 휴직·파견 등의 교원 후임은 정원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정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휴직·파견 등을 한 교원이 복직·복귀 시 원 소속 학교로의 복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수급 상황에 따라 원 소속교를 관할하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를 달리하여 임용할 수 있다.

제5조 (품성과 자질 평가) 교장자격연수·중임심사, 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정, 수석 교사선발·업적평가·재임용심사,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 현장근무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 (양성 균형 인사)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임용 시 어느 한 성(性)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임용 시기 조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 전직 또는 승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감사 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자
5. 기타 물의를 야기하여 교육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전보 기준 공개) 교육청은 전보 기준을 전보 발령 6개월 이전에 공개한다.

제9조 (긴급 전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입을 것이 우려되는 교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긴급 전보할 수 있다.

제10조 (근무 기간 계산) 이 원칙에서의 근무 기간은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장 교장 임용 및 제청 추천

제11조 (임용 제청 추천 자격) 특수학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 제청 추천한다.

1.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2.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3. 교육전문직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제12조 (교장의 중임) 교장임기제에 따른 교장의 중임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은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요령」 및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4조 (전보 대상) ① 교장 정기 전보 주기는 4년으로 한다.

- ② 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원거리 통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할 경우에는 현임교 2년 이상 근무자로 제한한다.
- ③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현임교 1년 미만 근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제15조 (전보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2차 임기 만료자 포함) 2년 이하인 자
 2. 교육감 지정 이상의 연구학교 교장으로 연구학교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사유로 전보 유예가 불가피한 자
- ② 전보 유예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학기 단위로 실시한다.

제16조 (임지 배치) ①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실시하되, 직무수행능력, 청렴도, 교통편의, 교육경력, 성별균형, 근무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 ② 현임교 재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물의를 야기한 자 등은 이를 반영하여 임지 배치한다.
- ③ 전임 교장 재임기간이 2년 이하인 학교에는 정년 잔여 2년 이하인 교장은 가급적 배치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교감 임용

제17조 (임용자격)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 1.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승진순위에 해당하는 자(단, 정년 잔여기간 1년 미만인 자는 제외)
- 2. 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 임용된 자
- 3. 교육전문직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자(단, 휴직 기간은 제외하며, 국내·외 연수기관 파견 등은 별도 계획에 따른다.)

제18조 (전보 대상) ① 교감 정기 전보 주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비정기 전보는 현임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 ③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현임교 1년 미만 근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제19조 (전보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 1. 정년 잔여 1년 이하인 자
 - 2. 시·도 교육감 지정 이상의 연구학교 교감으로 연구학교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 3. 기타 사유로 전보 유예가 불가피한 자
- ② 전보 유예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학기 단위로 실시한다.

제20조 (임지 배치)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구역으로 하여 실시하되, 직무수행능력, 청렴도, 교통편의, 교육경력, 성별균형, 근무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제4장 수석교사 임용

제21조 (임용자격)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석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 중에서 임용한다.

제22조 (임지 배치 및 전보) ① 수석교사는 특수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 ② 수석교사 정기 전보 주기는 4년으로 한다.
- ③ 비정기 전보는 현임 유치원 1년 이상 근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전보할 수 있다.

- ④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현임교 1년 미만 근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 ⑤ 정년잔여 2년 이하인 자는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제5장 교사 임용

제23조 (임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급상황에 따라 배정하고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근무 교사는 교육장이, 공립 특수학교 근무 교사는 교육감이 임용한다.

1.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 합격된 자
 2. 서울 시내 사립 특수학교에서 공립 특수학교로 경력경쟁채용 된 자
- ② 초빙 교사의 임용은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지침」에 의한다.
- ③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에 의한 원로교사 임용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 ④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의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24조 (전보) ①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교육장 위임사항에 의거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의 합의에 의해 실시한다.

- ② 교육지원청 및 공립 유치원 소속 교사의 전보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주관하여 교육장 간에 합의한 별도 계획에 의하여 교육지원청 배정을 한 후,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관내 전보를 시행한다.
- ③ 교사 정기 전보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는 3년으로 한다.
- ④ 국·공립 학교간 교원 교류, 타시·도간 교류 교사의 전보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교육감이 시행한다.
- ⑤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전보는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25조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제 교원은 「공립학교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임용한다.

제6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제26조 (임용, 제청 및 전보) ①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관급 승진 순위 3배수 이내인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별도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1. 교장 경력 또는 교장 자격이 있는 자
 2. 교육전문직원(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경력이 있는 자
- ②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보는 교육행정·연구능력, 교육경력, 소속기관 간의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제7장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제27조 (선발 임용)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공개 전형을 통해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선발 임용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 (전형 응시자격) ① 서울특별시 소재 국·공·사립 특수학교(급)·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서울 시내 소재 유치원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2. 특수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인 특수학교(유치원) 1급 정교사

③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 영양교사는 「2027학년도 초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 원칙」을 준용한다.

제30조 (3회 이상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의 감점 적용)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에 3회 이상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는 4회 응시부터 감점제를 적용한다.

제31조 (전형 방법) 서류전형과 1·2차 전형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전형 평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서류 전형은 추천 기준, 임용상의 결격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격 처리한다.

② 1차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교직실무 및 전문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2차 전형은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현장근무실태평가, 심층 면접 등을 실시한다.

제32조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최종 합격자는 전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 기준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미임용자는 다음 해 명부에 최우선 순위로 등재할 수 있다.

제33조 (임용)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의 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의 범위 안에서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제34조 (전직) ① 교육전문직원(장학사, 교육연구사)의 전직은 근무 기간, 연령, 소속 기관의 업무 형편, 기타 전직 사유 등을 고려한다.

② 교사에서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 후, 5년 이상 근무하고 교원으로 전직할 때 전직될 직위의 임용 요건을 갖춘 경우, 교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 임용한 후 1년(파견 기간 포함) 동안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교육전문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에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직전의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 제35조 (전보)** ① 현임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자질, 능력, 경력, 근무실적, 소속기관 간의 업무형편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 ② 징계, 감사 결과 및 기타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는 1년 미만이라도 비정기 전보할 수 있다.

제8장 국·공립 특수학교 간 교원의 교류

- 제36조 (교류대상자 선정)** ① 국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 ②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전보 예정일 기준 서울 시내 공립학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교육감의 3배수 이내 추천에 의하여 국립학교의 장이 선정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시행계획 수립) 국·공립학교 간 교원을 교류함에 있어서 시행 계획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9장 사립 특수학교 교사 경력경쟁채용

제39조 (종류 및 방법) 사립 특수학교의 폐교·학급감축 등으로 인한 퇴직·과원 교사 발생 시 또는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 전형을 거쳐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제40조 (대상 교사) ① 서울 시내 소재 사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경력경쟁채용 임용 예정일 현재 현임교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소속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교직관이 투철한 자
2.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직위해제 중인 자, 사회적 물의야기 등의 사실이 있는 자
2.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이 있는 자
3. 교장, 교감 자격 소지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 및 같은 법 제10조의4 각 호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5. 그 밖에 교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1조 (경력경쟁채용 시기)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경력경쟁채용은 교사 수급 상 필요한 경우 당해 학년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 (시행 계획 수립) 사립학교 교사의 공립학교 교사로의 경력경쟁채용은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0장 보 칙

제43조 (기타사항)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거나, 「유치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을 준용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시 이에 따른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사관리원칙을 다르게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및 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44조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지침 수립)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관련 법규와 이 인사관리원칙을 근거로 자체 세부 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27학년도부터 인사에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원칙 시행 당시 종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